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신형식

전화 02-2204-4201

보도자료

2021. 9. 24.(금)

제 목

전자발찌 훼손 전, 후 여성 2명 연쇄살인범 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금지정보 및 예외적 실명 공개(제1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1호)
 - ☑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3호)
 -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0조 제2항)
 - ☑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0조 제3항)
- ※ 2021. 9. 23.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

- 금일(9. 2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고인 강윤성을 강도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음
-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송치 즉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 관련자 조사 및 추가 압수수색,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으로 객관적 증거 확보하여 범행동기 등을 규명하고,
 - 피고인이 본건 이전에도 속칭 '휴대폰 깡'으로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추가 확인, 입건하는 한편,
 - 피해자 유족들을 면담하고 신속히 장례비 및 유족구조금을 지급하였음
-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하고, 피해자 측의 법정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임

1

피고인

- 강윤성(남, 56세, 무직)

※ '97. 7. 22.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05. 4. 22. 보호감호 가출소 중 재범하여 '06. 3. 8. 특가법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5년 선고 ('20. 10. 4. 형기종료), '20. 10. 5. 보호감호 개시, '21. 5. 6. 보호감호 가출소 (전자발찌 부착)

2

공소사실 요지

- '21. 7. 27.경 단말기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없이 휴대폰 2대(300만원 상당) 개통·처분하고, '21. 8. 18.경 유심칩을 지인에게 제공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1. 8. 26. 21:30경 서울 송파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 A○○를 유인,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하고,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휴대폰 4대(600만원 상당)를 구입·처분 **【강도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21. 8. 27. 17:31경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에 정차한 렌트카 내에서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사전에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훼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21. 8. 29. 03:30경 서울 송파구 소재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B○○의 승용차 내에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 **【살인】**
- '21. 9. 5. 21:34경 서울송파서 유치장에서 유치장 관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 **【공무집행방해】**

※ 별첨 '범죄일람표' 참조

3

수사 경과

- 8. 29. 피고인 긴급체포
- 8. 31. 피고인 구속
- 9. 7. 송파서, 사건 송치(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기소의견)
- 9. 7.~9. 14. 검찰, 전담팀 구성, 주거지 압수수색,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
- 9. 14. 구속기간 연장(2차 구속만기 : 9. 26.)
- 9. 16. 송파서, 추가 사건 송치(공무집행방해 기소의견)
- 9. 24. 검찰, 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

※ 살인예비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

4

수사 결과

- 검찰에서는,
 - 사건 발생 직후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전담검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 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구속사유 소명하고,
 - 송치 즉시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주임검사 사건)을 구성, 주거지 등 압수수색 2회,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으로 객관적 증거 확보하여 범행동기 등을 규명하고, 추가 범죄 확인하여 입건하였음
- 강도살인에 대하여는,
 -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 추가 압수수색 등 진행결과,
 - ▶ 피고인은 가출소 직후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주변 사람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고,

- ▶ 강도살인 범행 전 '21. 7. 27.경 휴대폰 개통을 가장하여 교부받은 휴대폰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분하는 속칭 '휴대폰 깡'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입건)
- ▶ 범행 직전 공업용 절단기와 식칼을 준비하고, 범행 직후에 지인에게 전화하여 망 A○○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등,

☞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이 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본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사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구속기소

● 사경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C○○에 대한 **살인예비**에 대하여는,

- 사경 송치 범죄사실은, 「'21. 8. 27.경 C○○를 죽일 목적으로 식칼, 절단기를 차에 실은 채 C○○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다」는 것인바,
- 피고인은 검찰에서, 'A○○를 살해한 후 증거인멸을 위해 식칼 등을 다른 물건들과 함께 차량에 보관했을 뿐 이를 이용하여 C○○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 실제로 식칼 등은 다른 증거물과 함께 차량 뒷좌석 가방 안에서 발견 되었으며, C○○에 대한 원한관계 등 범행동기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사경에서 일부 허위·과장진술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 피고인이 C○○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C○○를 살해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C○○에게 만나자고 연락한 사정만으로는 살인 예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워,

☞ 살인예비 부분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

※ 참조판례(2009도7150) : 살인을 범할 목적,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 이외에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인정되어야 살인예비죄 성립

●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 피고인은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한 만연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으로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하고, 범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며,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욕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일명 '사이코패스')로 판단됨
-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호소*하나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어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 없음
 - * 피고인은 정신건강을 이유로 수 회 검찰 소환에 불응함
- 피고인의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본건 범행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피해자지원]**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유족에게 장례비 등 긴급지원 하고, 송치 직후 유족면담 등 피해자지원 절차 진행, **'21. 9. 15. 유족 구조금 지급결의(9. 17. 지급)**하는 등 피해자 유족 지원을 신속히 진행하였음

5 **향후계획**

● 검찰은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측 법정진술권 보장 등 각종 지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임☑

[별첨]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장소	피해자	범행내용	비고(죄명)
1	'21. 7. 27.경 송파구 휴대폰 판매대리점	D○○ 통신사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거나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 없이 대리점 사장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신규개통 담당직원에게 개통신청서를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처분하는 속칭 '휴대폰 깡'으로 300만원 상당 휴대폰 2대 편취	사기
2	'21. 8. 18.경 경기 남양주 불상지	-	피고인 명의로 위 1.번과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010-8438-****)와 연결된 유심칩을 지인을 통해 소위 '강이사'로 불리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3	'21. 8. 26. 21:30경 송파구 피고인 주거지	A○○	사전에 식칼과 절단기를 준비한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불을 씌운 다음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강취	강도살인
4	'21. 8. 27. 11:30경 강남구 E매장 등 서울 일원	E회사 등	강취한 A○○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휴대폰 4대(596만원) 구입하는 등 6회에 걸쳐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5	'21. 8. 27. 17:30경 송파구 도로에 정차한 차량 뒷좌석	-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법률 위반
6	'21. 8. 29. 03:30경 송파구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뒷좌석	B○○	평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약 2,2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	살인
7	'21. 9. 5. 21:34경 서울송파경찰서 유치장	F○○ G○○ *각 경찰관	유치장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감 F○○가 모포 교체를 위해 유치장 문을 열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G○○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G○○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	공무집행 방해